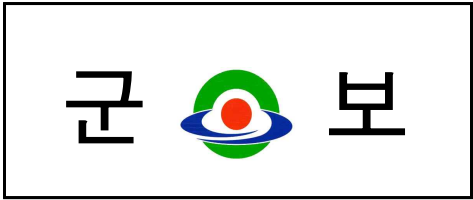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78호 2026. 1. 8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조 례

○예천군 향교·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(예천군 조례 제2728호)

훈 령

○예천군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(예천군 훈령 제478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6년 1월 8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728호

예천군 향교·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예천군 향교·서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군수의 책무)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

한다)의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 사업 및 대상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(이하 “사업비”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향교·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
2. 향교·서원의 문화체험·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
3. 향교·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·예절 교육사업
4. 향교·서원의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
5. 향교·서원의 복원,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
6. 그 밖에 군수가 향교·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·서원으로 한다.

제6조(지원 신청 및 심의) 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이 포함된 서류와 「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의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,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사업의 적정성
2. 군민의 정신문화·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
3. 사용의 투명성 여부

제7조(교부결정의 취소)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·

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「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8조(결과 보고) ① 지원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개요 및 내용
2. 사업성과 및 평가
3. 사진
4. 지출내역 영수증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협의체의 설치)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·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군수가 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협의체의 구성)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향교·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·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
2. 예천군의 향교·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
3. 향교·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·단체의 대표자
4. 향교·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
5. 향교·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
6. 예천군 지역주민 대표
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협의체의 운영) ① 협의체의 회의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, 일시·장소·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.

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,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「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제정이유

- 예천군 향교·서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◇주요내용

가.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(제5조)

- 향교·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
- 향교·서원의 문화체험·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
-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·서원으로 함

나. 지원사업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(제8조)

- 지원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.

다. 향교·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제9조~제11조)

예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6년 1월 8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훈령 제478호

예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

예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〈개정 2026. 1. 8.〉

부서별 근로자 정수의 직종별 책정내역(제11조제3항 관련)

부 서 명	직 종 명	정수	직무내용
총 계		132	
본 청 소 계		82	
기 획 예 산 실	행정보조원	2	비서요원, 행정자료실 관리
총 무 과	행정보조원	1	비서요원
홍 보 소 통 과	행정보조원	2	행정업무 보조
지 역 경 제 과	행정보조원	1	가로등 기동수리반
사 회 복 지 과	행정보조원	3	의료급여관리사,통합사례관리사
주 민 행 복 과	행정보조원	8	사회복지업무 보조
환 경 관 리 과	환경미화원	45	청소업무
	단순노무원	2	야생동물감시원
농 정 과	행정보조원	1	행정업무 보조
축 산 과	행정보조원	1	가축방역업무 보조
건 설 교 통 과	행정보조원	2	행정업무 보조
	도로보수원	7	도로보수
	단순노무원	1	주정차단속 보조
도 시 과	단순노무원	6	온천장관리
직속기관 소계		34	
보 건 소	행정보조원	25	보건업무 보조
농업기술센터	행정보조원	1	농촌지도업무 보조
	단순노무원	4	농기계수리 보조
	단순노무원	3	생균제 및 토양검정 보조
	단순노무원	1	실증시험장 시설물 관리 및 작물재배(농기계작업)

부 서 명	직 종 명	정 수	직무내용
사업소 소계		13	
체 육 사 업 소	단순노무원	1	수영강사 및 안전요원
	단순노무원	2	수련관 매표 및 시설관리
	단순노무원	1	보일러 및 시설물관리
	단순노무원	1	시설물관리(양궁장)
곤 충 연 구 소	단순노무원	7	호박벌 및 정서곤충사육, 꿀벌육종, 생태원 관리
맑은물사업소	행정보조원	1	행정업무 보조
의 회 소 계		2	
의 회	행정보조원	1	비서요원
	단순노무원	1	청사관리
읍 면 소 계		1	
예 천 읍	단순노무원	1	청사관리

부서별 청원경찰 정수

부 서 명	계	경 비 청원경찰	감시·단속 청원경찰			비고
			소계	상수도 보호 구역관리	하천감시 및 골재채취	
계	7	4	3	1	2	
총무과	1	1				
주민행복과	2	2				
종합민원과	1	1				
안전재난과	2		2		2	
맑은물사업소	1		1	1		

◇개정이유

- 행정기구 개편 및 행정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정된 부서별 정수 등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.

◇주요내용

가.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수 조정

부 서 명	정 수 내 역			조 정 사 유	비 고
	조정전	조정후	증감		
총 계	58	54	감4		
총무과	4	1	감3	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이동 및 정수 조정	
홍보소통과	0	2	증2		
문화관광과	1	0	감1		
도시과	0	6	증6		
건축과	6	0	감6		
환경관리과	47	45	감2		

나. 농업기술센터 직무 변경

- 생균제 및 토양검정보조(4명→3명)
- 실증시험장 시설물 관리 및 작물재배(농기계작업) 신설(1명)

